

철도특별사법경찰대 현업공무원 지정인원(2023.12.31.기준)

(단위 : 명)

소속	계	일근(비현업공무원)	교대(현업공무원)
계	495	94	401
철도특별 사법경찰대	121	40	81
서울지방 철도경찰대	193	22	171
부산지방 철도경찰대	82	11	71
광주지방 철도경찰대	56	12	44
제천지방 철도경찰대	43	9	34

철도특별사법경찰대 초과근무 인정기준

- 「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 훈령 제499호) 제11조(교대근무자의 시간외 근무), 제11조의2(특수 일근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), 제12조(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)에 따름